



86th November 2015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CONTENTS

WHERE IS GRACE CHANG?

Refugees(難民,난민)

COVER STORY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FTA NEWS

한-중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미리
취득하세요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예정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⑦

구매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수수료 인지 여부

신한 소식 신한 Academy 정기 고객 교육 III

식품·화장품 기업 수출책임자를 위한
FDA 요건충족 & FTA 원산지검증
무료 교육 세미나



ABOUT

WRITERS



WHERE IS GRACE CHANG?

 Refugees(難民, 난민)



장승희
 대표 관세사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3)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9 월 터키 해변에 잠자듯 누워 숨진 아기 사진의 주인공입니다.

5 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시리아의 난민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일란 쿠르디 또한 조국인 시리아를 떠나 부모, 형과 함께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난민이었습니다.

지난 6 월 발표된 유엔난민기구(UNHCR)의 Global Trends Report 에 따르면 2014 년 말 전 세계 난민, 실항민 등 강제이주민의 수는 6,000 만 명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122 명 중 한 명은 난민, 국내실항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 중인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 세계 난민의 절반은 어린이이며 매 10 분마다 국적 없는 아기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고 합니다.

지중해에 아일란 쿠르디와 같은 시리아 난민이 있다면, 압록강을 건너는 북한이탈주민들(탈북자)도 있습니다. 지난 20 여년간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의 수는 약 28,000 여명**, 매년 1500 명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숫자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 중 약 20%정도입니다. 나머지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 및 국경에서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고 있습니다.

난민을 발생시키는 나라가 아닌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국민임이 참 다행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역할입니다.

작금의 사건 및 이슈들을 보며 이 나라가 후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국민들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라는 시처럼 우리나라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의 난민 신청은 급증하고 있고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하는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동포인 탈북자뿐 아니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국의 난민들까지 보호하고 지켜주는 큰 뜻을 품은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달 커버스토리는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FTA News 는 한-중 FTA 를 대비한 원산지인증 수출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난민을 돕고,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셔야만 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중환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Cover
Story*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1. 들어가며

금리란 빌려준 돈이나 예금에 붙는 이자 또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최근 미국금리인상이 대두되면서 매스컴에서는 주요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인상에 대한 찬반여론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여 각 국가들을 긴장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중대한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인데, 과연 금리의 기능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 금리의 기능과 상승영향

일반적으로 금리는 자금배분기능, 공급조절기능,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배분기능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공급조절기능은 수요와 공급 어느 한쪽으로 과잉되지 않도록 자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인 경기조절기능으로 국내의 가계소비활동과 기업의 투자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가 상승하여 제품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제품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는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 하고, 기업은 높은 금리로 인해 새로운 투자활동이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의 상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이나 외환보유자들은 이익을 위하여 금리가 높은 국가를 향하여 자본을 움직일 텐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국내외환보유고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금리를 상승시키므로 그 부담은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나 기업에게 곧바로 타격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3.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04 년에 미국은 5.2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로 11 년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미국과 무역교류를 밀접하게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리상승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일반가계

앞서 금리변동은 국가간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 보유된 외환은 급격하게 유출되며,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이때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금액도 늘어나며,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대출인 주택담보대출도 커지므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 또한 2004 년과는 다르게 당시의 한국 가계부채는 470

조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086 조원으로 급증하여 금리가 1%라도 오른다면 연간 10 조 8600 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므로 가계부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2) 주택시장과 아파트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꺼려하며, 매매시장이 침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시장과 아파트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무엇보다도 부동산 자산은 현금화시키기에 제한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자부담 증가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최저수준 금리가 2016년부터 인상된다면 이자부담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수요자의 매수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게 되고, 대출을 통하여 레버리지¹를 일으킨 보유자들의 급매물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가격상승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수익형 부동산도 이미 기존 공급 물량이 많아 16년~17년 공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3) 금융업

역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유출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에 불안정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격한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상승할 경우 단기적으로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외환보유와 경상수지² 흑자기조로 인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4) 기타 수출제조산업

수출제조산업의 경우 금리의 영향을 받는 업종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산업이나 에너지산업은 금리의 영향을 덜 받으며, 미국의 호황으로 인하여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라 보며, 금리의 영향을 받는 원자재 관련 일반기계업이나 철강업계는 회사내부의 재무적인 측면과 국가 간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다소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 현재진행형인 미국의 금리인상의 논쟁

지난 9월 19일에 금리동결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지금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놓고 여러 국가와 학자들은 연내에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내년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내부회의에서는 인상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인상을 찬성하는 파는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 올라왔으며 적절한 시기에 금리만 인상시킨다면 국가별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며, 인상을 반대하는 파는 단순히 통화정책 정상화만을 위함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찬성파의 단순이론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파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조지프 스티글리츠(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금리인상이 직결적으로 실업률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나오는 고용지표테이블은 현실과 사뭇 다르며 금리를 올린다고 하여도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물론 청년의 절반은 기존의 일자리 또한 없어질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카우식 바수(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의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경제공황과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실제금리를 인상한 결과 신흥국의 자금만

¹ 레버리지 : 한글말로 지렛대라고 합니다. 적은 돈을 증거금으로 삼아 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² 경상수지 :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사는 거래에서 벌어들인 돈과 내준 돈의 차액입니다.

이탈을 촉발하여 현지통화 가치에 급격한 변동성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금리인상은 선불리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찬성파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마틴 펠드스타인(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체제는 누구라든지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상태라 말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체계가 안전성을 이룬 상태에서 더 이상의 물가하락은 없기에 금리 인상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라 하여 반대파들의 의견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임스 볼라드(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히려 금리하락과 금리동결이 서민층과 빈곤층에게 가장 큰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역효과에 대해 논하여 경제가 다시 불황으로 돌아가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도 중국과 신흥국들은 인상을 반대하거나 연기시키기를 희망하는 반면 멕시코와 칠레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이렇듯 금리의 인상여부를 놓고 어느 정도까지를 고려하는지와 그 속도마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나라는 각 국가에서 펼치는 정책과 의견을 고려하여 모든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으로 금리의 기능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나 기업에게 크나큰 악재로 작용하여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에서 국내에서는 다방면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모두 미국의 금리인상이 주된 요인이었다는 것을 경험했듯이 약 10년을 주기로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단순하게 넘길 상황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가계에서는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하여 주식을 투자하거나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며, 기업은 자산관리 중 현금성 비중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통해 성장둔화를 대비하며,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의 속도에 맞추어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 상황에 마주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자세라 판단합니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경덕

kdseo@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중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미리 취득하세요

1.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수출자가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음을 세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되는데 특히 올해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이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되어, 3년 또는 2년마다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해야하는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대표적인 2가지 혜택으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FTA 등) 첨부서류제출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생략과 EU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인보이스금액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것을 들 수 있겠다. 즉,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입증서류, 원산지확인서 등의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EU국가로의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수입자가 FTA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2. 한-중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국인 한-중FTA가 발효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24일 관세청에서는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기업이 한중 FTA활용을 미리 준비하고, 발효 즉시 신속한 원산지증명서발급을 통하여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고안하여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즉,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 미리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假)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일반수출자, 인증수출자 간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비교

구분	일반수출자	인증수출자
제출 서류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②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제출 생략
	③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④ 원산지소명서/확인서	
발급 기한	3일(현지 확인 시 10일)	2시간

3. 발빠른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한중FTA 수출경쟁력 강화하길

한중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서, 수출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입증서류(원재료의 원산지(포괄) 확인서, 국내제조 확인서, 회사소개책자,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또는 내부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경우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이 10점 이상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중FTA 이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기업이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해야한다면, 해당 전담자가 교육 이수를 통해 1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놓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중국 수출기업이라면, 대부분의 기업이 이미 한중FTA 세율혜택에 대하여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중FTA 양허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하루 빨리 한중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활용하여 한중FTA발효와 동시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가(假)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4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병 관

bkpark@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예정

1. 개정사유

-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 절차 개선을 통해 납세자와 세관간 조세마찰 최소화
- 특수관계 거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비용 및 소요시간 절감을 위한 Easy-ACVA 제도 신설
-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해외직접구매 활성화를 위한 과세운임 적용 체계 개선
-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과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납세자 참여 확대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 관련 동종·동류비율 산출절차 개선**
 - 제4방법 적용을 위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제4방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
 - 비교대상업체 선정 곤란 등 동종·동류비율 산출이 어려운 경우 산출방법을 구체화하고 필요 시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 하여 비교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제26조)

- 동종·동류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 규정(제27조)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제도(ACVA) 개선

- 중소기업의 ACV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한 Easy-ACVA 제도 신설(제61조, 제64조)
- 관세 ACVA와 국세 AP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제37조의2) 사항의 시행을 위한 절차 규정(제61조)
- ACVA 이행관리를 위한 연례보고서 제출자료 명확화 등(제65조)

□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3KG이하 특급택송화물 운임 현실화

-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3KG이하 특급택송화물의 과세운임표를 30%이하 적용하여 소비자 세금 부담 경감(별표1)

[별표 제 1 호] 특급특송화물 과세운임표

개정 이전					개정 이후				
중량 (KG)	1 지역	2 지역	3 지역	4 지역	중량 (KG)	1 지역	2 지역	3 지역	4 지역
1.0	15,000	18,500	27,000	28,000	1.0	10,500	12,950	18,900	19,600
2.0	20,200	28,000	41,500	43,000	2.0	14,140	19,600	29,050	30,100
3.0	24,500	32,000	51,000	55,000	3.0	17,150	22,400	35,700	38,500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 기타 관세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 확정가격 신고기간 일괄 연장신청 제도 마련 및 확정가산율(공제율) 산출신청 절차 및 서식 규정(제 51조)
-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신청 서식·절차 규정(제58조)
- 기타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판단 시 비교대상 범위 확대(제19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 산정절차 보완(제52조) 등

3. 시행일자 : 2015.10.14.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유 입 세
isyoo@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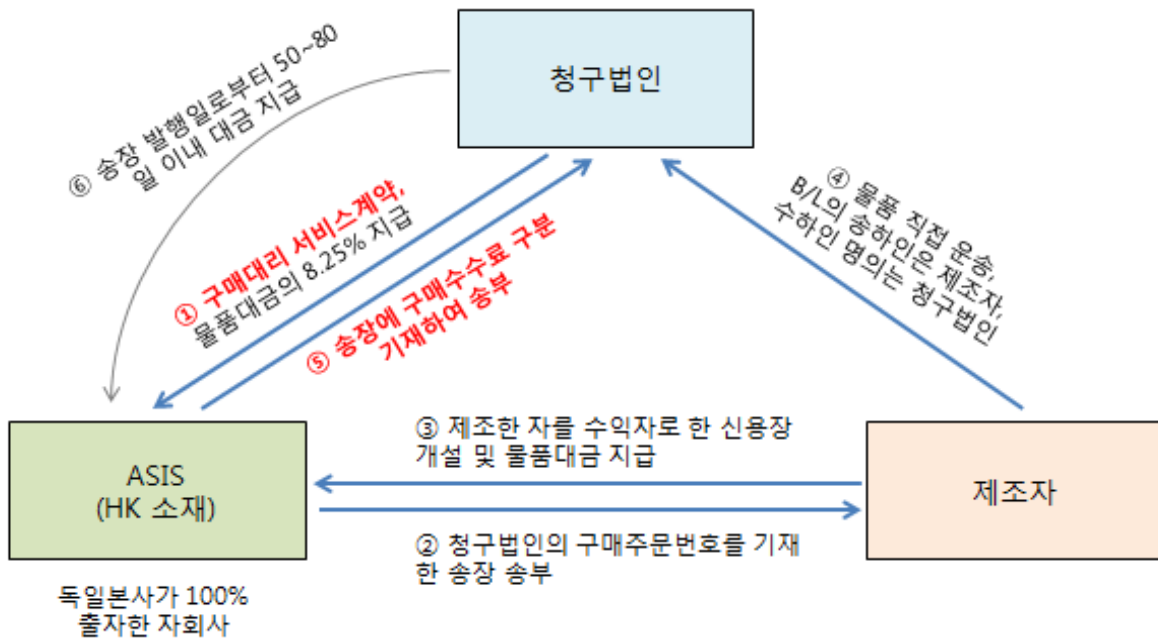
«신한's Opinions»

일반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사전심사제도(ACVA) 이용 시 처리기간이 1년이었으나, 신설된 Easy-ACVA는 처리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송화물 과세운임표가 현실적인 운임보다 다소 높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특송화물 과세운임표 일부 운임을 낮춤으로써 세부담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하며, 불이행 시 100만원의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 확정가격신고가 어려운 경우 해당 세관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동 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세관에 잠정가격 신고를 한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적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리 미숙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위험이 감소되었습니다.

구매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수수료인지 여부 (대법원 판결 2008 도 9508)



I. 개요

청구법인은 ASIS(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ASAG 가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회사)를 구매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물품에 관하여 ASIS 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물품대금의 8.25%(2001 년 8 월 9 일 이전까지는 5%)를 지급하였다.

ASIS 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구법인이 ASIS 에 지급한 구매수수료가 거래가격에 가산해야 하는 수수료인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II.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ASIS 와 제품구매와 관련한 구매대리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SIS 는 구매대리인으로 하기와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 구매대리인은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2. 구매대리인은 청구법인의 서명승낙 없이는 제조

자와 가격결정, 가격과 제품의 스타일 변경, 배송 및 선적일자의 연장 등에 관한 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며 최종결정권은 청구법인이 가진다.

3. 청구법인은 구매대리인의 도움없이 직접 제조자에게 구매대리 대상제품을 주문할 수 있고 이 경우 구매대리인은 청구법인의 구매주문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구매대리인의 대리행위 없이 다른 회사를 통하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다수 있다.

Ⅲ.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과 제조자 간 매매관계가 형성되어 제조자는 매도인이 되고, 청구법인은 매수인이 되며 ASIS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수수료는 관세법 제 30 조제 1 항제 1 호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의 의견

ASIS 는 수입물품 대금을 제조자에게 선 지급한 후 이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왔고, 청구법인은 ASIS 를 통하지 않고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는 해외 제조자들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수입신고필증 상 공급자를 ASIS 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ASIS 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독립적인 판매자이므로 청구법인이 ASIS 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라고 볼 수 없다.

IV. 관련 법령

관세법 제 30 조제 1 항제 1 호[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 30 조제 1 항제 1 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 (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 1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 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V. 판결

청구법인과 ASIS 는 구매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ASIS 는 제품의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고 구매자 선정, 가격결정, 운송 기타 관련업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청구법인이 가진다. 또한 청구법인이 ASIS 에게 구매대리 하여 본사가 선정한 한정된 제조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로 ASIS 를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구매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사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있는 등 ASIS 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

VI. 추가 견해.

WCO 핸드북 2.2.2 “수수료와 중개료”에 따르면 구매자가 판매자의 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때 판매자에게 간접 지급한 유형이며 이를 지급하면서 판매자가 지불하였어야 할 채무를 구매자가 경감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를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음은 구매자의 대리인과 판매자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의 예시를 나열한 것이다.

1. 구매자의 대리인으로서 수행역할

- 구매자를 위해 물품을 선정 및 구매자가 필요한 것을 판매자에게 전달
- 구매자를 위한 물품의 샘플 검사
- 생산 품질을 확신하기 위해 물품과 공장 점검
- 좋은 가격 협상을 위해 구매자를 지원
- 물품 운송 계약을 위해 구매자를 지원
- 여러 판매자의 선적물을 통합하고 모든 구매물품의 송장 준비

구매자의 대리인은 본질적으로 구매인의 이익을 위해 구매자를 대신하여 행동한다. WCO 협정 제 8 조에 대한 주해에서 “구매수수료란 평가대상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해외에서 그를 대신하는 용역에 대하여 그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구매대리인을 구분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구매자가 대리인의 활동 또는 협상이나 구매과정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구매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벗어난 수행활동

- 대리인의 행동을 구매자가 지배하지 않으며 판매자와 연관되어 있음
 - 수입된 물품의 권리와 손실의 위험은 대리인의 책임
 - 판매인과의 판매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승인이 필요 없음
 - 구매수수료를 판매인에게 청구
- 대리인이 상기 열거한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 구매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의 대리인 또는 독립적인 구매자/재 판매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판매자의 대리인으로서 수행역할

- 판매자의 고객을 찾거나 판매자를 위해 잠재적 구매자에게 주문을 권유하고 전달
- 판매자를 위한 운송, 보험, 물품 보관계약
- 수출 서류, 송장 준비를 위해 판매자 지원

협정에서는 판매 대리인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구매자에 의해 부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하라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이 구매자를 위한 것인지 혹은 판매자를 위한 것인지 수입서류 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그의 대리인 사이의 계약서 상에 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기재할 것을 권고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성 지

(sjchoi@customsservice.co.kr)

신한 소식

[신한 Academy 정기 고객 교육 III]

식품·화장품 기업 수출책임자를 위한 FDA 요건충족 & FTA 원산지검증 무료 교육 세미나

11 월 3 일 제 3 회 신한 Academy 정기 고객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신한관세법인에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과 관련하여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 드리고자 26년 경력의 미국 수입통관과 식품·화장품 FDA 인증 절차를 보유한 미국 LA 소재 통관사 D.K. Express의 대표 Kathy Hong 미국공인관세사와 함께 미국 FDA 인증방법 및 한미 FTA 적용방법에 관한 실무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분들께 귀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신한관세법인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542-1181
- E-mail : shinhan@customsservice.co.kr
- 신한관세법인 홈페이지 : www.customsservice.co.kr



ABOUT WRITERS

COVER STORY -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



서 경 덕 관세사
kd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김포지사 IBM 파견팀 팀장
- 前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 수출입통관 및 기계/기기 HS 품목분류 컨설팅

FTA News-

한-중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미리 취득하세요



박 병 관 관세사
bk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前 무역상사 해외영업부 (2004-2012)
- 섬유/의류 통관 및 품목 분류 전문
- FTA 원산지 컨설팅 전문

관세 법령 변경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유 입 세 관세사
isvo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 지사
- 前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건설/기계 통관 및 품목분류 전문
- 환급컨설팅 전문

Case Analysis of
 Customs Valuation ㉞

구매대리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수수료인지 여부



최 성 지 관세사
sj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 관세 자문 부문
- 법인심사, 종합심사 컨설팅
- AEO 인증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컨설팅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